

투자위험등급 4 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메리츠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 35139)
- 집합투자업자 명칭 : 메리츠자산운용(주)
-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기준일 : 2022. 11. 1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2. 11. 10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요약정보>	5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9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9
3. 모집예정금액 : 10조 족	9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9
5. 인수에 관한 사항	10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0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1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3
4. 집합투자업자	13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3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4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5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5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8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20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22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26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7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1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6
1. 재무정보	3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8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4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6
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46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48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8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1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51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53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54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7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57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7

[참고] 펀드용어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성과보수를 정한 펀드인 경우 총보수, 비용 기재 외의 성과보수가 별도로 부과되어 투자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실제 부과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35139)

투자위험등급 4 등급 [보통 위험]						메리츠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30% 이하를 국내주식에, 70% 이하를 국내채권에 투자하며, 수익자는 주식,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 이자를 변동 위험, 시장위험 등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 채권 등에 분산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70% 이하를 채권에 투자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자는 주식,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 시장위험 등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 및 채권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55%이내	0.885%	0.5%	0.78%	0.8950%	146	241	339	548	1,149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종류 A(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과 종류 C(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7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2.9.30 기준)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1.11.02 ~ 22.11.01	20.11.02 ~ 22.11.01	19.11.02 ~ 22.11.01	17.11.02 ~ 22.11.01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C)(%)	2002-09-16	-9.19	-0.67	1.16	0.63	3.88
	비교지수(%)	2002-09-16	-4.86	1.32	2.14	0.94	4.42
	수익률 변동성(%)	2002-09-16	4.82	4.84	6.14	5.47	5.32
주 1) 비교지수 : KOSPI 25% + KIS 채권종합 01Y 65% + call 지수 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주요 투자 위험	매입 방법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투자자 유의사항		김형석	1987	책임(차장)	33 개	12,828억원	-9.02%	-	-9.02%	0.73%	4 년 1 개월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3 개	214 억원											
		박정임	1977	부책임(수석)	28 개	11,469억원	-9.02%	-	-9.02%	0.73%	3 년 3 개월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3 개	214 억원											
<p>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 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를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또는 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p>주1) 주요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시(오후 5 시)이전 :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17 시(오후 5 시)이전 : 제 3 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 4 영업일 지급 																	

	· 17 시(오후 5 시)경과 후 :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17 시(오후 5 시)경과 후 : 제 4 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 5 영업일 지급																		
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격	산정방법 공시장소	<p>-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p> <p>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p>																			
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 <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body> </table>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인 종류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세제혜택의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	메리츠자산운용(주) (TEL. 02-6320-3000)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																		
효력발생일	2022. 11. 10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46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p>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head> <tbody> <tr> <td>판매 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7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판매 수수료 후취</td><td>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판매 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또는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7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판매 경로 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 <td>판매 경로 오프라인</td><td>온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 <td>판매 경로 온라인 슈퍼 (S)</td><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 <td>기타</td><td>무권유저비용 (G)</td><td colspan="2">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진한투자기구입니다.</td></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7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또는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7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온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진한투자기구 입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7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또는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7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온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진한투자기구 입니다.																			

		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고액거래자(종류 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 종류 S-I[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연금펀드전용(F-P)	개인연금, 퇴직연금용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이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교환법률집행기관(www.fss.or.kr)
- 투자설명서(www.kofia.or.kr), 한도금리투자회사(www.meritzam.com) 및 펀드(www.kofia.or.kr) 사출제작
- 정기보고서(www.fss.or.kr) 및 한도금리투자회사(www.meritzam.com) www.kofia.or.kr
- 자산운용고지서(www.kofia.or.kr) 및 한도금리투자회사(www.meritzam.com) www.meritzam.com
- 수신금지(www.kofia.or.kr) 및 한도금리투자회사(www.meritzam.com) www.meritzam.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 35139)							
(종류)클래스	종류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종류C 수수료미정구- 구-오프라인	종류Ce 수수료미정구- 온라인	종류CI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고 액	종류CF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편 드 등	종류CW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랩	종류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종류C-P 수수료미정 구-오프라인 -개인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X381	AX380	AX382	AX383	AX384	AX385	AX386	AX387
(종류)클래스	종류S-P 수수료미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종류S-I 수수료미정구- 온라인슈 퍼-고액	종류CF-P 수수료미정구- 온라인슈 퍼-편드전용	종류C-P2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퇴 직연금	종류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무 권유저비용	종류CG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무 권유저비용	종류C-Pe 수수료미정구- 온라인-개인 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X388	AX389	B6623	B6854	BP309	BP239	BT57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 쪽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사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판매)합니다.

주1) 모집(판매)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판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 35139)							
(종류)클래스	종류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종류C 수수료미정구- 온라인	종류Ce 수수료미정구- 온라인	종류CI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고 액	종류CF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편 드 등	종류CW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랩	종류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종류C-P 수수료미정 구-오프라인 -개인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X381	AX380	AX382	AX383	AX384	AX385	AX386	AX387
(종류)클래스	종류S-P 수수료미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종류S-I 수수료미정구- 온라인슈 퍼-고액	종류CF-P 수수료미정구- 온라인슈 퍼-고액	종류C-P2 수수료미정구- 온라인-퇴 직연금	종류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퇴 직연금	종류CG 수수료미정구- 온라인-무 권유저비용	종류C-Pe 수수료미정구- 온라인-개인 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X388	AX389	B6623	B6854	BP309	BP239	BT57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2.9.16	최초설정
2007.8.20	회사명 및 펀드명칭 변경 (한불종합금융 -> 메리츠종합금융)
2008.7.28	영업양수도에 의한 집합투자자 변경(메리츠종합금융 → 메리츠자산운용)
200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변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변경) - 투자신탁명 변경 : 메리츠 SOGEKO 안정혼합투자신탁1호 → 메리츠 SOGEKO 안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010.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규약변경 (세법 개정에 따른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2010.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운용전문인력변경(채홍국 -> 박순엽) - 비교지수변경
2010.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명변경, 투자비율 및 비교지수변경 - 투자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보수율인하(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보수 인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따른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제93조 및 제223조)
2011.1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따른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2012.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4항 개정사항 반영

2013.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세법개정사항 반영 - 사옥이전에 따른 주소변경(시행일 : 2013. 7. 1)
2013. 1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2014.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 명칭변경(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주요 운용전략 상세화 및 일부 문구 변경 - 최근 회계연도 6개월 경과에 따른 반기실적 기재 등
2014. 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집합투자규약(종류형으로 변경/주식편입비중 변경/신탁업자보수와 일반사무 관리회사보수율 인하 등)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및 FATCA 반영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채권평가회사에 추가사항 반영 등
2014. 1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펀드코드(35139), 종류C(AX380)로 변경적용
2015. 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종류CF-P 신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등
2015. 8.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종류C-P2 신설)
2015.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2016. 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2016. 1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등
2017. 3.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2017. 4.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 변경(종류AG, 종류CG 신설)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연금계좌세액공제)
2017.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 변경(종류C-Pe 신설) - 최근 회계연도 6개월이상 경과에 따른 반기실적 기재 등
2017. 9.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등
2018. 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등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및 변동성 변경 등
2019. 9.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
2019. 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변동성 변경 등
2020. 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 및 투자위험 등급 변경(5등급->4등급)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2020.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운용으로 변경 및 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2021.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규약 변경(환매수수료 삭제) 등
2021.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2022. 1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내용 반영 등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메리츠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계동, 계동빌딩) (대표전화 : 02-6320-30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운용 경력년수	주요이력사항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김형석	1987	책임 (차장)	33 개	12,828억원	-9.02%	-	-9.02%	0.73%	4 년 1 개월	-2014-12~현재 메리츠자산운용 주식운용팀 매니저/애널리스트 -2012-12~2014-11 한국투자증권 법인영업부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3 개	214 억원												
박정임	1977	부책임 (수석)	28 개	11,469억원					3 년 3 개월	- 2018-03~현재 메리츠자산운용 주식운용팀 매니저 - 2011-06~2015-06 BNP PARIBAS HK, Asia Pacific 주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3 개	214 억원						식기관영업부 - 2006-06~2011-03 UBS Securities(USA), Asia ex-Japan 주식기관영업부
--	--	--	-----	--------	--	--	--	--	--	---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률 왜곡이 있을 수 있어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분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투신운용팀	2006.04.03-2008.07.30	-	-
-	2008.07.31-2010.05.02	채홍국	-
-	2010.05.03-2013.6.20	박순엽	-
-	2013.6.21-2020.12.30	김홍석	-
주식운용팀	2020.12.31~현재	2020.12.31~현재 김형석	2020.12.31~현재 박정임

주1) 작성기준일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혼합채권형)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편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또는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고액거래자(종류 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 종류 S-I[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연금펀드전용(F-P)	개인연금, 퇴직연금용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이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 채권 등에 분산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70% 이하를 채권에 투자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자는 주식,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 및 채권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25% + KIS채권종합01Y 65% + call지수 10%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주식	3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	채권	7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여야 하며 사모사채권을 제외한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대통령

	(기업어음)	(40% 이하)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시 신용등급이 A2-이상인 것,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집합투자증권	5%이하 (단, ETF에의 투자는 30%까지 가능)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 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한다)
⑤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⑥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⑦	증권의 차입	①~②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⑧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⑨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내지 ③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내지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주식과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의 총합계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②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	----	-------

	<p>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p>	
동일종목 투자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 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p>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p>	최초 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동일법인 등 이 발행한 지 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84조제4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	<p>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증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개요

-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투자신탁입니다.
- 주식에 30% 이하, 채권에 70% 이하를 투자하면서 유가증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과 배당금, 이자수령 등에 따른 이자소득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2) 주요투자전략

<채권부문>

- 투자신탁재산의 70% 이하를 국채, 통안증권, 우량 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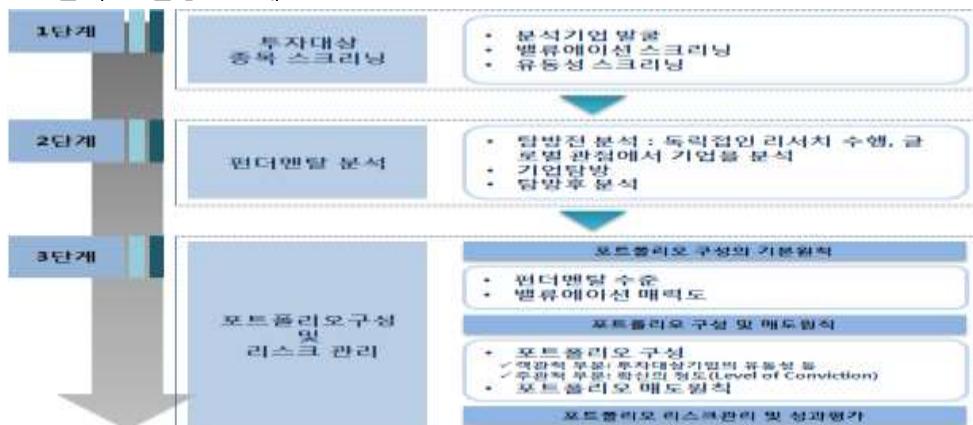


- 듀레이션 조정전략(펀드 잔존만기 조정)

금리 예측과 추세분석 결과에 따라 금리국면별(하락기, 횡보기, 상승기) 추세에 순응하는 탄력적인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조절로 위험관리

<주식부문>

- 투자신탁 재산의 3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여 자본 이득을 추구합니다.
-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장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교지수*대비 초과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 포트폴리오전략
 - ① 장기적인(3년이상) 관점에서 우수한 경영진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지닌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② 업종 내 시장점유율, 성장성, 업종 내 경쟁력, 브랜드를 고려하여 기업 선정
 - ③ 다른 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한 진입장벽(기술, 규모, 가격 등)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
 - ④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할 능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
 - ⑤ 미래에 일등기업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
 - ⑥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증가면서 높은ROE(Return on Equity)*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업에 투자
 - ⑦ 주가가 성장성 및 경쟁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저평가 되어있는 기업에 투자
 - ⑧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
 - ⑨ 소외된 저평가 기업에 대한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제고
 - ⑩ 건전한 지배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갖춘 기업에 투자
- 커버리지 기업 및 산업에 대해 심도 깊은 리서치를 수행하며 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경쟁적 우위, 그리고 향후 사업의 방향성 및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 수익성 등을 평가하여 베류에이션과 비교 분석 합니다.
- 포트폴리오 선정프로세스



* **듀레이션** :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 평균 만기로, 채권 가격의 이자율이 변화하는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된다. 듀레이션이 길면 시증금리의 변동에 따른 가격의 변동도 크게 나타난다.

*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기간이익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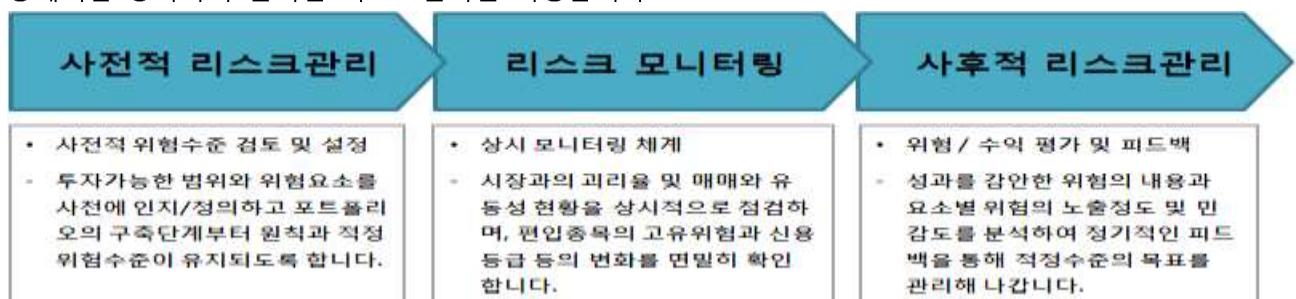
※ 비교지수 : KOSPI 25% + KIS채권종합01Y 65% + call지수 10%

※ 선정사유 : 시장수익률과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KOSPI와 KIS채권종합01Y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산내 편입비율을 감안하여 비교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 상기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위험관리 : 피드백(사전적리스크->리스크모니터링->사후적 리스크관리)을 통한 리스크에 대한 사전통제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시행합니다.



나. 수익구조

당 집합투자기구는 주식에 30% 이하, 채권에 70% 이하를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투자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자산을 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이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 입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에 따른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는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의 '나. 환매'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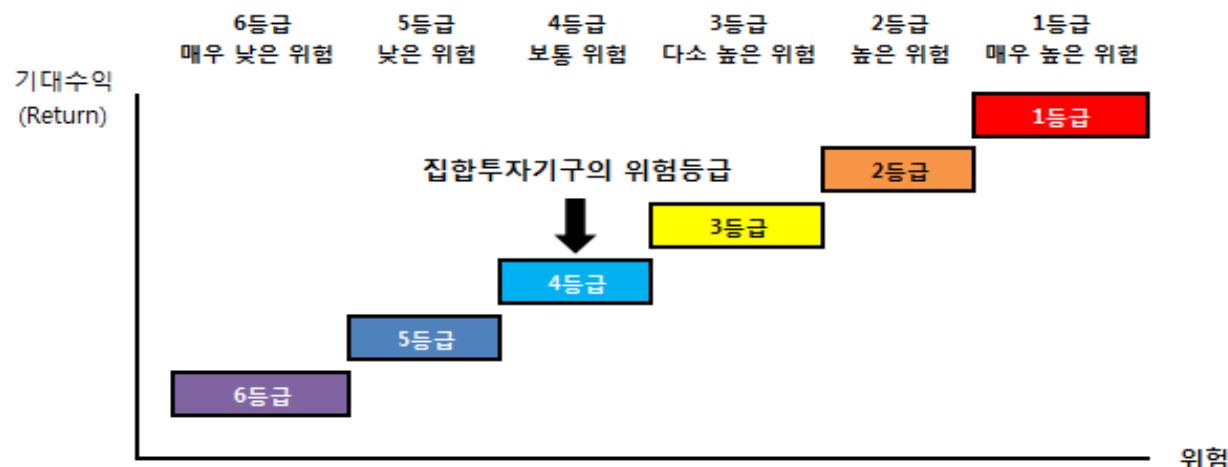
투자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	-------	-------

※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3년간 실제 주간 수익률의 변동성(연환산) : 6.02%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재산의 30% 이하를 주식에, 70% 이하를 채권에 투자하는 혼합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을 고려하여 6개의 투자위험 등급 중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 이란?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을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수치로써,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률 변동성 값이 클수록 투자신탁의 위험은 커집니다.



※ 투자위험등급분류 기준표(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음.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집합투자기구의 가입가능한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비율(%)						
	종류A	종류C	종류Ce	종류CI	종류CF	종류CW	종류S
보수구조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수수료미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오프라인-펀드 등	수수료미징구-온라인-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투자자의 자격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	가입제한이 없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집합투자증권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용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전용집합투자증권	Wrap account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 전용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0.55%이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후취판매 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구분	지급비율(%)			
	종류C-P	종류S-P	종류S-I	종류CF-P
보수구조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연금펀드전용
투자자의 자격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고액투자자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개설한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전용집합투자증권
선취판매 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후취판매 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구분	지급비율(%)			
	종류C-P2	종류AG	종류CG	종류C-Pe
보수구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투자자의 자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A)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투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집합투자증권
선취판매 수수료	없음	납입금액의 0.27%이내	없음	없음
후취판매 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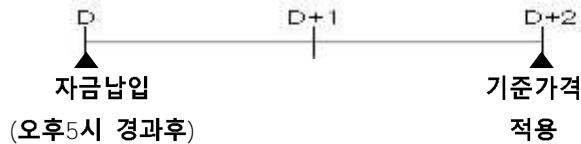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단,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단,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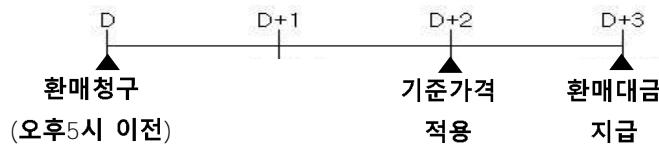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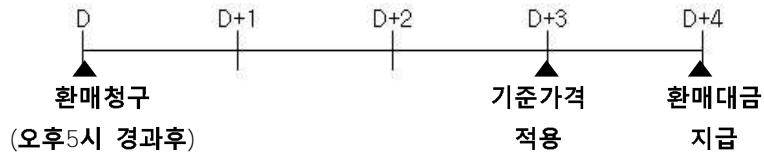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온라인을 통해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3) 환매(매입)청구시 취소 또는 정정

환매(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4)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5)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투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 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또는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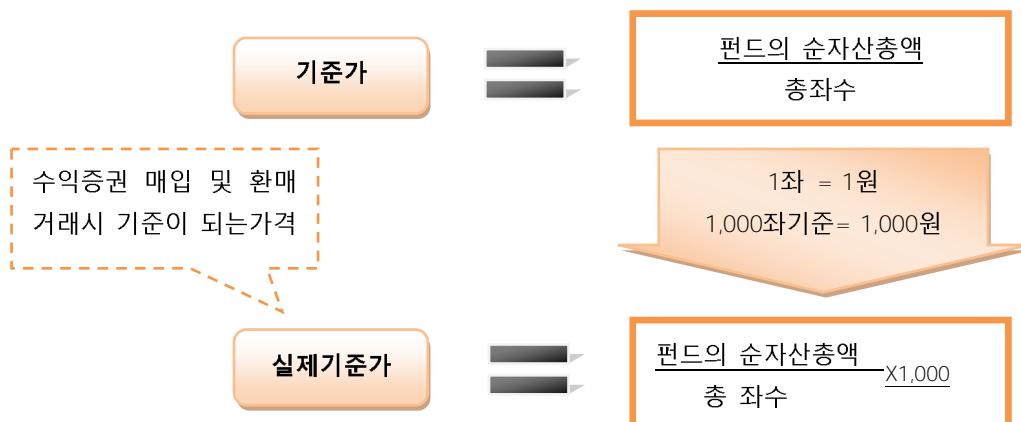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의 공고·개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개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개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 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1)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 가 방 법
①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 전날에 공고(또는 제공)된 기준가격으로 평가
②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③ 비상장주식	취득가격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 외화표시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날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⑤ 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⑥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 및 기업어음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 비상장채무증권과 유사한 증권 등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⑦ 외화표시채무증권	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상장채무증권 및 비상장채무증권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또는 시장에서 유통 가능성이 없는 사모사채로서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으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⑧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
⑨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⑩ 국내 상장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⑪ 국내 비상장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또는 제공)된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모자형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55%이내	-	-
C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	가입제한이 없음	-	-	-
Ce	수수료미징 구-온라인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 수익증권	-	-	-
Cl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 -고액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용 집합 투자증권	-	-	-
CF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 -펀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 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 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전용 집합투 자증권	-	-	-
CW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 -랩	Wrap account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 신탁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	3년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C-P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	-
S-P	수수료미징 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	-
S-I	수수료미징 구-온라인슈퍼-고액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고액투자자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	-	-	-
CF-P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연금펀드전용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개설한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
C-P2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	-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27%이내	-	-	-
CG	수수료미징 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	-	-	-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A	C	Ce	CI	CF	CW	S	C-P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0.3500	0.3500	0.3500	0.35	0.35	0.3500	0.3500	0.35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5000	0.7000	0.3500	0.05	0.03	0.0000	0.1500	0.6000	
신탁회사보수	0.0200	0.0200	0.0200	0.02	0.02	0.0200	0.0200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0	0.0150	0.0150	0.015	0.015	0.0150	0.0150	0.0150	
총 보수	0.8850	1.0850	0.7350	0.435	0.415	0.3850	0.5350	0.9850	
기타비용	0.0100	0.0101	0.0102	0.0074	-	0.0100	0.0094	0.010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8950	1.0951	0.7452	0.4424	0.415	0.3950	0.5444	0.9950	-
(동종유형 총 보수)	0.78	1.15	0.78	-	-	-	-	-	-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0.8950	1.0951	0.7452	0.4424	0.415	0.3950	0.5444	0.9950	-
증권거래비용	0.0153	0.0153	0.0152	-	-	0.0153	0.0148	0.0151	사유 발생시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S-P	S-I	CF-P	C-P2	AG	CG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보수	0.3500	0.35	0.35	0.3500	0.35	0.35	0.35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1200	0.02	0.01	0.5000	0.25	0.4	0.3000	
신탁회사보수	0.0200	0.02	0.02	0.0200	0.02	0.02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0	0.015	0.015	0.0150	0.015	0.015	0.0150	
총 보수	0.5050	0.405	0.395	0.8850	0.635	0.785	0.6850	
기타비용	0.0101	-	-	0.0089	-	-	0.0102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5151	0.405	0.395	0.8939	0.635	0.785	0.6952	-
(동종유형 총 보수)	-	-	-	-	-	-	-	-

총 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0.5151	0.405	0.395	0.8939	0.635	0.785	0.6952	-
증권거래비용	0.0152	-	-	0.0140	-	-	0.0152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1.09.16 ~ 2022.09.15]

* 기타비용 :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
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1.09.16 ~ 2022.09.15]

* 증권거래비용 : 국내주식매수수수료, 국내채권매수수수료, 장내파생매수수수료, 기타매수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수수수료,
대차관련수수료, REPO수수료, 해외주식매수수료, 해외채권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수수료, 해외파생매수수료 등.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6,855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단, 2013년 8월 28일까지 발생분에 한함)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
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
출합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율을 의미합니다.(2022.
9.30기준)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명칭(종류)		1년	2년	3년	5년	10년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146	241	339	548	1,149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112	229	350	606	1,340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76	156	239	416	927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45	93	142	248	558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43	87	134	233	525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40	83	127	222	500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56	114	175	305	684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102	208	318	552	1,223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53	108	166	289	648
S-I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	42	85	130	227	512
CF-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연금펀드전용	41	83	127	222	500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92	187	286	497	1,104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92	159	230	380	817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80	164	252	438	975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71	146	223	388	867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 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수익증권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또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수익증권, 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수익증권 및 종류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금액 한도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새액공제 15%)- 단, 해당 과세기간동안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p>※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p> <p>※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적용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 거주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p>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이내 세액공제 1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종류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당해 연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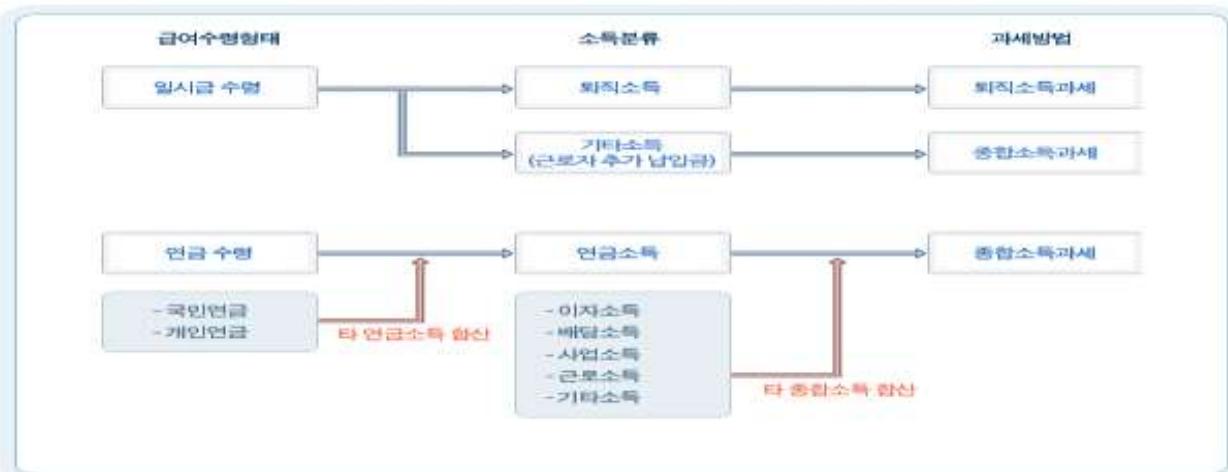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 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다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2)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3)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자료출처 :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

※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준가는 일반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있으며, 이들 가격은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meritzam.com)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일반기준가란,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과 채권 등의 모든 자산을 그날의 시가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 등의 수입을 추가하여 자산총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하여 순자산총액을 산출하고, 그 날의 수익증권(또는 주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기준가격이 산출됩니다.

과표기준가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등은 과세대상 수익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표산정을 위해 산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거래는 기준가격으로

하고 과세는 과표기준가격으로 합니다.

(7) 투자자에 대한 과세 사례(예시)

(단위:원)

거래일자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거래구분	좌수	입출금금액
연초	1,000	1,000	입금	10,000,000좌	10,000,000
연말	1,300	1,200	출금	10,000,000좌	13,000,000

신탁재산이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투자이익의 구성이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속자가 법인 또는 개인(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를 가정)인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의 소득·원천징수세액·결정세액·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이자·배당	매매·평가이익
채권	1,000,000	-1,000,000
주식	2,000,000	1,000,000

① 투자이익과 과세대상이익(채권과 주식 이자·배당 및 채권의 매매평가이익의 합)은 각각 3,000,000 원과 2,000,000원입니다.

②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원청징수세액

- 원천징수대상소득=투자신탁이익(개인·법인동일)→ 2,000,000원

- 원청징수세액 = $2,000,000 \times 15.4\% = 308,000$ 원

③ 결정세액(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 개인과 법인의 경우

(단위:원)

구분	개인
결정세액	투자신탁이익 \times 누진세율(T) $= 2,000,000 \times T$
납부세액	결정세액 - 원천징수세액 $= 2,000,000 \times T - 308,000$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0 기(2021.09.16 - 2022.09.15)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19기(2020.09.16 - 2021.09.15)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18기(2019.09.16 - 2020.09.15)	삼덕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현황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단위:원)

항 목	재무상태표		
	제 20 기 (2022.09.15)	제 19기 (2021.09.15)	제 18기 (2020.09.15)
운용자산	43,178,430,728	48,141,848,688	84,803,729,342
증권	42,235,579,855	47,930,032,193	83,894,379,979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942,850,873	211,816,495	909,349,36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79,532,360	85,439,554	224,407,757
자산총계	43,357,963,088	48,227,288,242	85,028,137,09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52,230,456	292,828,839	409,719,782
부채총계	152,230,456	292,828,839	409,719,782
원본	47,537,726,714	43,972,734,965	81,570,559,899
수익조정금	-34,028,346	-1,732,037,310	-3,782,846,562
이익잉여금	-4,297,965,736	5,693,761,748	6,830,703,980
자본총계	43,205,732,632	47,934,459,403	84,618,417,317

(단위:원, %)

항 목	손익계산서		
	제 20 기 (2021.09.16 - 2022.09.15)	제 19기 (2020.09.16 - 2021.09.15)	제 18기 (2019.09.16 - 2020.09.15)
운용수익	-3,863,971,644	6,281,442,044	11,771,696,632
이자수익	534,648,775	656,411,679	1,832,336,863
배당수익	254,628,932	364,230,633	656,595,708
매매/평가차익(손)	-4,653,249,351	5,260,799,732	9,282,764,061
기타수익	0	4,764,488	2,782,888
운용비용	420,717,904	575,943,059	1,355,928,977

관련회사 보수	420,717,904	575,943,059	1,355,928,977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3,276,188	16,501,725	33,570,595
당기순이익	-4,297,965,736	5,693,761,748	10,384,979,948
매매회전율	13.30	117.03	101.06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20기(2022.09.15)		제19기(2021.09.15)		제18기(2020.09.15)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용자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942,850,873	942,850,873	211,816,495	211,816,495	909,349,363	909,349,363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4,000,000,000	4,000,000,000	6,000,000,000	6,000,000,000	6,000,000,000	6,000,000,000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 지분증권	11,605,396,560	11,605,396,560	13,991,043,100	13,991,043,100	23,332,533,130	23,332,533,130
2. 채무증권	26,630,183,295	26,630,183,295	27,938,989,093	27,938,989,093	54,561,846,849	54,561,846,849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55,726,188	155,726,188	70,906,596	70,906,596	161,476,450	161,476,450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23,806,172	23,806,172	14,532,958	14,532,958	62,931,307	62,931,307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43,357,963,088		48,227,288,242		85,028,137,099
부 채						
운용부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7,554,720	47,554,720	29,032,240	29,032,240	125,715,198	125,715,198
4. 수수료미지급금	104,675,736	104,675,736	113,594,081	113,594,081	209,634,584	209,634,584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152,230,456		292,828,839		409,719,782
자 본						
1. 원본	47,537,726,714	47,537,726,714	43,972,734,965	43,972,734,965	81,570,559,899	81,570,559,899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4,331,994,082	-4,331,994,082	3,961,724,438	3,961,724,438	3,047,857,418	3,047,857,418
(발행좌수 당기: 47,537,726,714 쪽)						
전기: 43,972,734,965 쪽)						
전전기: 81,570,559,899 쪽)						
(기준가격 당기: 917.65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43,205,732,632		47,934,459,403		84,618,417,317
부채와자본총계		43,357,963,088		48,227,288,242		85,028,137,099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20기(2021.09.16-2022.09.15)		제19기(2020.09.16-2021.09.15)		제18기(2019.09.16-2020.09.15)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789,277,707		1,025,406,800		2,491,715,459
1. 이 자 수 익	534,648,775		656,411,679		1,832,336,863	
2. 배당금수익	254,628,932		364,230,633		656,595,708	
3. 수수료수익			4,764,488		2,782,888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15,976,099		6,184,497,011		12,630,537,405
1. 지분증권매매차익	253,501,130		6,154,980,070		11,854,884,935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62,447,065		29,431,067		775,649,754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7,904			2,716	
1. 지분증권매매차손	3,710,684,695		539,077,182		2,728,027,326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1,258,540,635		384,618,554		619,728,277	
4.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8. 기타거래차손						
운 용 비 용						
1. 운용수수료	157,493,997		433,994,092		592,444,784	
2. 판매수수료	254,224,935		209,482,392		470,229,772	
3. 수탁수수료	8,998,972		354,490,931		858,829,558	
4. 투자자문수수료			11,969,736		26,869,647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3,276,188		16,501,725		33,570,595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4,297,965,736		5,693,761,748		10,384,979,948
전당순이익(또는 전당순손실)		-0.09041168		0.129483912		0.127312844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09.16 - 2022.09.15	437	437	165	162	130	127	472	433
2020.09.16 - 2021.09.15	785	785	253	264	602	632	437	480
2019.09.16 - 2020.09.15	1,617	1,594	142	145	974	1,008	785	848

주 1) 2020.09.16 - 2021.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944,702,512 좌/3,944,702,512 원

주 2) 2019.09.16 - 2020.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920,091,114 좌/2,920,091,114 원

가. 종류형펀드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1.09.16 - 2022.09.15	154	154	45	44	32	31	167	151
2020.09.16 - 2021.09.15	485	485	52	55	382	398	154	168
2019.09.16 - 2020.09.15	1,120	1,068	79	77	714	711	485	501

주1) 2020.09.16 - 2021.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361,350,124좌/1,361,350,124원

주2) 2019.09.16 - 2020.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544,547,984좌/1,544,547,984원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A(수수료선취-오프라인)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09.16 - 2022.09.15	113	113	28	27	22	21	119	108
2020.09.16 - 2021.09.15	175	175	51	52	113	120	113	123
2019.09.16 - 2020.09.15	377	363	29	29	231	232	175	183

주1) 2020.09.16 - 2021.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20,700,696좌/1,020,700,696원

주2) 2019.09.16 - 2020.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25,728,062좌/725,728,062원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09.16 - 2022.09.15	27	27	15	15	10	10	32	29
2020.09.16 - 2021.09.15	15	15	41	44	29	31	27	30
2019.09.16 - 2020.09.15	11	11	14	14	10	11	15	16

주1) 2020.09.16 - 2021.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43,295,099좌/243,295,099원

주2) 2019.09.16 - 2020.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3,272,847좌/73,272,847원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09.16 - 2022.09.15	0.345	0.345	0.079	0.078	0.000	0.000	0.425	0.388
2020.09.16 - 2021.09.15	0.420	0.420	0.090	0.094	0.164	0.177	0.345	0.379
2019.09.16 - 2020.09.15	0.500	0.491	0.173	0.178	0.254	0.244	0.420	0.449

주1) 2020.09.16 - 2021.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323,726좌/3,323,726원

주2) 2019.09.16 - 2020.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955,733좌/2,955,733원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09.16 - 2022.09.15	1.8	1.8	0.5	0.4	1.3	1.2	1.0	0.9
2020.09.16 - 2021.09.15	1.1	1.1	1.2	1.3	0.5	0.5	1.8	2.0
2019.09.16 - 2020.09.15	2.2	2.1	0.3	0.3	1.4	1.4	1.1	1.2

주1) 2020.09.16 - 2021.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6,956,245좌/16,956,245원

주2) 2019.09.16 - 2020.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093,431좌/4,093,431원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09.16 - 2022.09.15	110	110	16	16	12	12	113	103
2020.09.16 - 2021.09.15	126	126	12	13	29	30	110	120
2019.09.16 - 2020.09.15	150	143	10	10	34	33	126	131

주1) 2020.09.16 - 2021.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86,245,819좌/986,245,819원

주2) 2019.09.16 - 2020.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86,934,335좌/486,934,335원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09.16 - 2022.09.15	1.64	1.64	0.58	0.56	0.34	0.32	1.89	1.72
2020.09.16 - 2021.09.15	1.20	1.20	0.70	0.74	0.27	0.28	1.64	1.80
2019.09.16 - 2020.09.15	1.63	1.55	0.74	0.73	1.17	1.16	1.20	1.25

주1) 2020.09.16 - 2021.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5,583,352좌/15,583,352원

주2) 2019.09.16 - 2020.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739,465좌/4,739,465원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09.16 - 2022.09.15	0.69	0.69	0.10	0.10	0.58	0.57	0.22	0.20
2020.09.16 - 2021.09.15	0.06	0.06	0.67	0.72	0.04	0.04	0.69	0.76
2019.09.16 - 2020.09.15	0.03	0.03	0.03	0.03	0.00	0.00	0.06	0.07

주1) 2020.09.16 - 2021.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307,247좌/6,307,247원

주2) 2019.09.16 - 2020.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90,621좌/290,621원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09.16 - 2022.09.15	31	31	16	16	7	7	41	37
2020.09.16 - 2021.09.15	12	12	33	35	13	14	31	34
2019.09.16 - 2020.09.15	1	1	14	14	3	3	12	13

주1) 2020.09.16 - 2021.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90,940,204좌/290,940,204원

주2) 2019.09.16 - 2020.09.15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7,528,636좌/77,528,636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동안의 평균 수익률,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1.11.02 ~ 22.11.01	20.11.02 ~ 22.11.01	19.11.02 ~ 22.11.01	17.11.02 ~ 22.11.01	02.09.16 ~ 22.11.01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8.19	0.42	2.27	1.72	4.33
비교지수	-4.86	1.32	2.14	0.94	4.42
수익률변동성(%)	4.82	4.84	6.14	5.47	5.32
종류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9.19	-0.67	1.16	0.63	3.88
비교지수	-4.86	1.32	2.14	0.94	4.42
수익률변동성(%)	4.82	4.84	6.14	5.47	5.32
종류A(수수료선취-오프라인)	-9.01	-0.47	1.37	0.83	1.19
비교지수	-4.86	1.32	2.14	0.94	2.00
수익률변동성(%)	4.82	4.84	6.14	5.47	5.32
종류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8.87	-0.32	1.52	0.98	1.02
비교지수	-4.86	1.32	2.14	0.94	2.01
수익률변동성(%)	4.82	4.84	6.14	5.47	5.36
종류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8.54	0.03	1.88	1.34	1.28
비교지수	-4.86	1.32	2.14	0.94	1.84
수익률변동성(%)	4.82	4.84	6.14	5.47	5.38
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8.68	-0.12	1.72	1.18	0.27
비교지수	-4.86	1.32	2.14	0.94	1.80
수익률변동성(%)	4.82	4.84	6.14	5.47	5.38
종류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9.10	-0.57	1.27	0.73	0.73
비교지수	-4.86	1.32	2.14	0.94	1.98
수익률변동성(%)	4.82	4.84	6.14	5.47	5.36
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8.66	-0.09	1.75	1.21	0.26
비교지수	-4.86	1.32	2.14	0.94	1.81
수익률변동성(%)	4.82	4.84	6.14	5.47	5.38
종류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9.00	-0.47	1.38		0.35
비교지수	-4.86	1.32	2.14		0.90
수익률변동성(%)	4.82	4.84	6.14		5.54
종류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8.82	-0.27	1.57		0.84
비교지수	-4.86	1.32	2.14		1.00
수익률변동성(%)	4.82	4.84	6.14		5.50

주1) 비교지수 : KOSPI 25% + KIS채권종합01Y 65% + call지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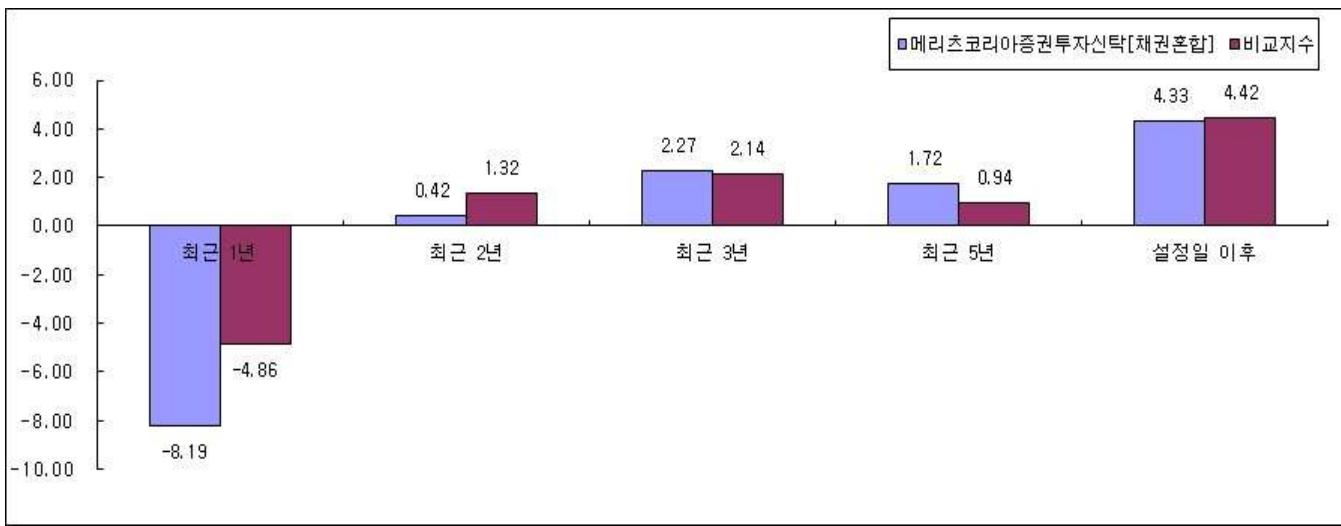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연평균수익률정보는 신고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6)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메리츠코리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1.11.02 ~ 22.11.01	20.11.02 ~ 21.11.01	19.11.02 ~ 20.11.01	18.11.02 ~ 19.11.01	17.11.02 ~ 18.11.01
비교지수	-4.86	7.89	3.80	2.59	-4.12
종류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9.19	8.65	4.94	3.30	-3.53
비교지수	-4.86	7.89	3.80	2.59	-4.12
종류A(수수료선취-오프라인)	-9.01	8.87	5.15	3.51	-3.34
비교지수	-4.86	7.89	3.80	2.59	-4.12
종류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8.87	9.03	5.31	3.67	-3.19
비교지수	-4.86	7.89	3.80	2.59	-4.12
종류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8.54	9.41	5.68	4.03	-2.86
비교지수	-4.86	7.89	3.80	2.59	-4.12
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8.68	9.24	5.52	3.87	-3.00
비교지수	-4.86	7.89	3.80	2.59	-4.12
종류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9.10	8.76	5.04	3.41	-3.44
비교지수	-4.86	7.89	3.80	2.59	-4.12
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8.66	9.28	5.55	3.90	-2.97
비교지수	-4.86	7.89	3.80	2.59	-4.12
종류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9.00	8.87	5.17	3.54	-5.72
비교지수	-4.86	7.89	3.80	2.59	-4.54
종류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8.82	9.08	5.36	3.72	-4.13
비교지수	-4.86	7.89	3.80	2.59	-3.91

주1) 비교지수 : KOSPI 25% + KIS채권종합01Y 65% + call지수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을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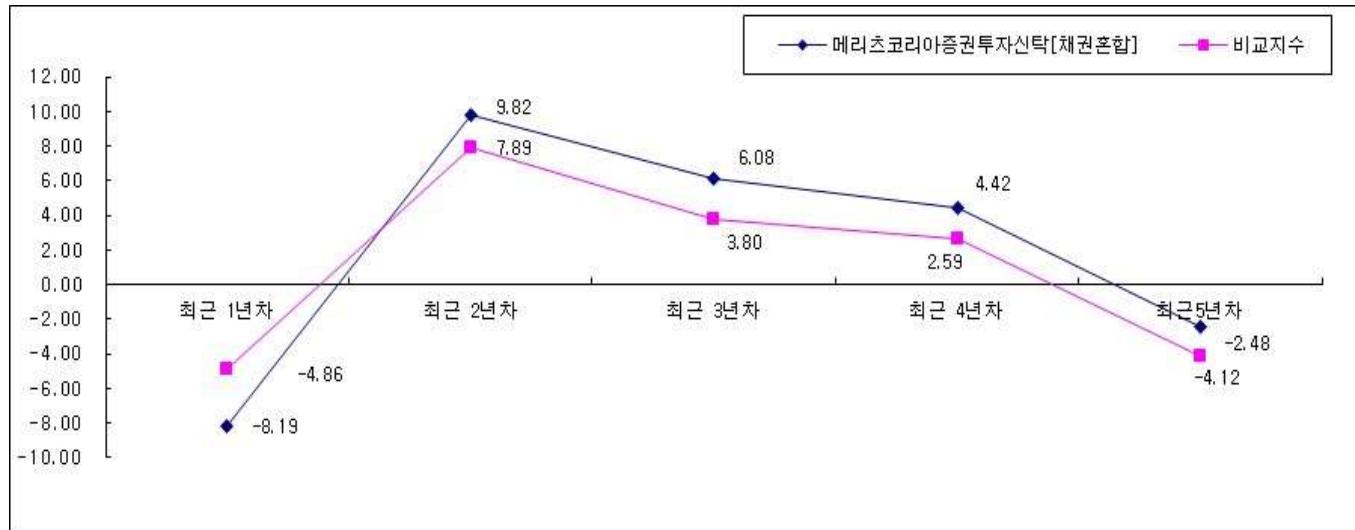
주4) 마지막 수익률을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을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

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2.9.15 현재 /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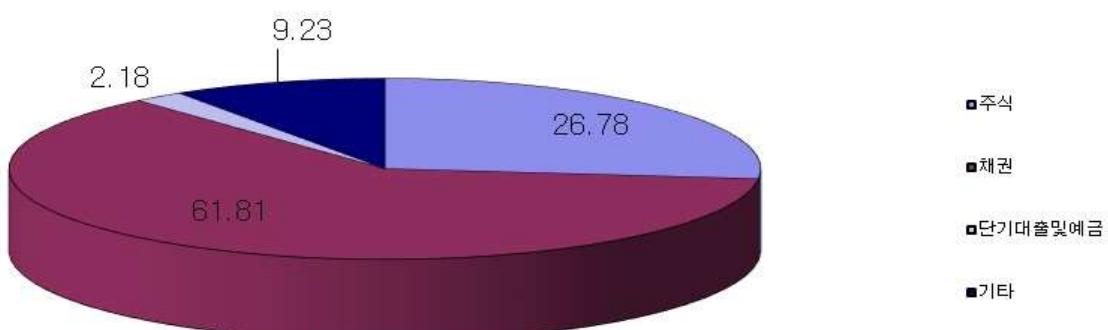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 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 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116	268	0	0	0	0	0	0	0	9	40	433
	(26.78)	(61.8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18)	(9.23)	(100.00)
합계	116	268	0	0	0	0	0	0	0	9	40	433
	(26.78)	(61.8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18)	(9.23)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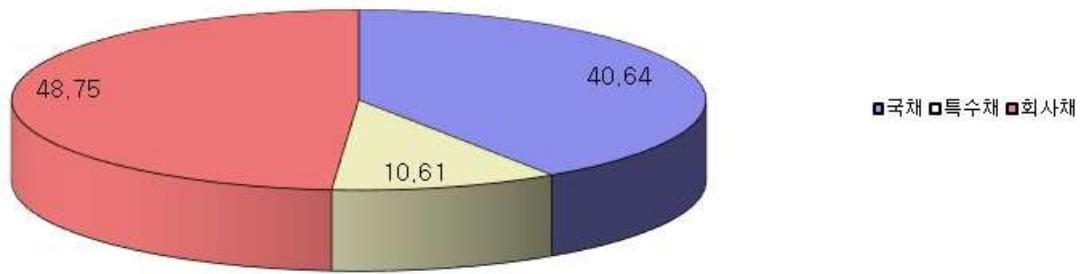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2022.9.15 현재 /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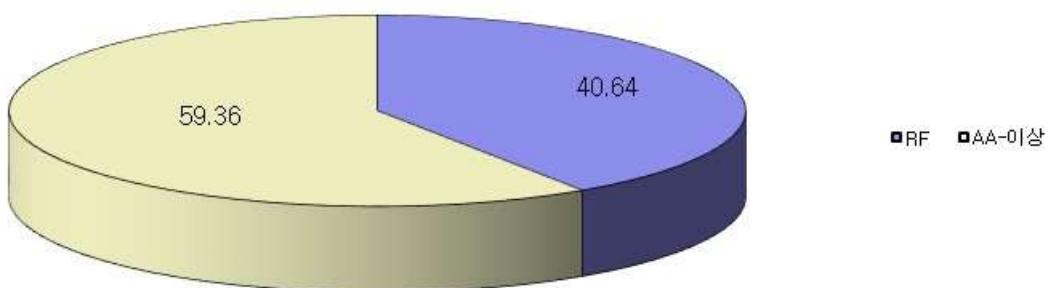
구분	채권종류						합계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통화채	회사채	
금액/비중	109	0	28	0	0	131	268
	(40.64)	(0.00)	(10.61)	(0.00)	(0.00)	(48.75)	(100.00)



2)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2022.9.15 현재 / 단위 : 억원, %]

구분	신용평가등급									합계
	RF	AAA	AA-이상	A-이상	BBB-이상	BB-이상	B-이상	C,CC,CCC	무등급	
금액/비중	109	0	159	0	0	0	0	0	0	268
	(40.64)	(0.00)	(59.36)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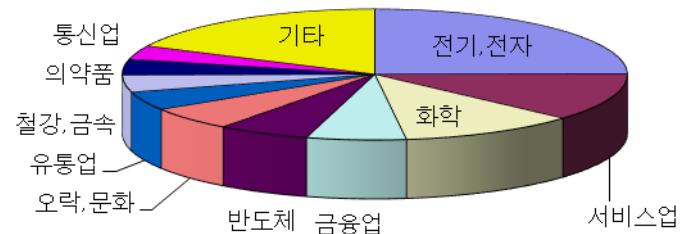


3)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2022.9.15 현재 /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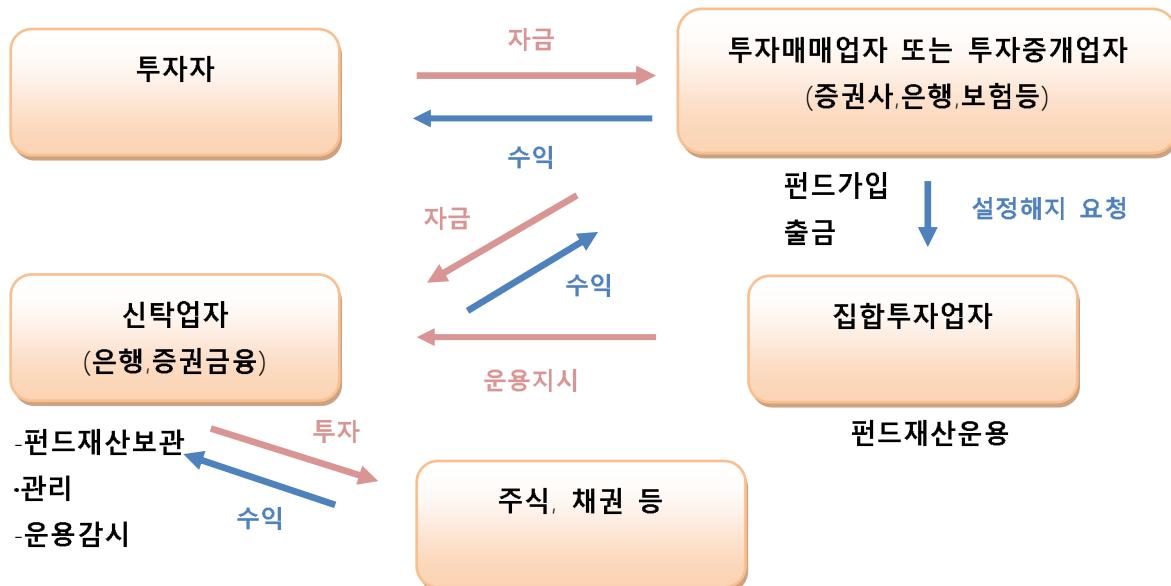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전기,전자	29	24.83

2	서비스업	14	11.84
3	화학	13	11.32
4	금융업	7	6.35
5	반도체	7	5.87
6	오락,문화	7	5.76
7	유통업	5	4.64
8	철강,금속	5	4.17
9	의약품	5	3.89
10	통신업	4	3.44
11	기타	21	17.87
합 계		116	99.98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메리츠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계동, 계동빌딩) TEL)02-6320-3000 http://www.meritzam.com/
회사연혁	2008. 5. 6 회사설립 2008. 7.11 자산운용업 본허가 2008. 7.28 메리츠종금 영업양수 2009. 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인가 2010. 3.11 자본금 50억원 증자 2013.12.16 자본금 감소 무상감자(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2015.10.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자본금	132.3억원
주요주주현황	메리츠금융지주 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 ·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 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

(2)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 재무상태표 >

구 분	제 14기말	제 13기말
	2021.12.31	2020.12.31
자산총계	78,342	69,304
- 현금및예치금	48,873	41,923
- 유가증권	22,877	20,622
- 이연법인세자산	2,048	2,730
- 기타자산	4,544	4,029
• 미수수익	2,217	1,804
• 무형자산	389	402
• 기타	1,938	1,823
부채총계	42,251	37,415
• 예수부채등	42,251	37,415
자본총계	36,091	31,888
- 자본금	13,230	13,230
- 자본조정	-74	-74
- 기타포괄손익	-344	-306
- 이익 잉여금	23,279	19,038
당기순이익	4,241	2,861

* 상기 요약 재무제표는 K-IFRS기준으로 작성함

<요약 손익계산서>

구 分	제14기	제13기
	2021.01.01~ 2021.12.31	2020.01.01~ 2020.12.31
영업수익	20,276	17,067
- 자산관리수수료	1,618	1,541
-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	12,906	8,946
- 집합투자증권 취급수수료	1,123	314
- 유가증권매매익	4,413	6,125
- 이자수익 등	216	141
영업비용	15,046	13,320
- 임직원급여	8,155	6,906
- 복리후생비	795	853
- 건물임차료	55	39
- 전산운용비	1,029	881
- 기타제비용	5,012	4,641
영업이익	5,230	3,746
영업외손익	8	121
세전이익	5,238	3,867
법인세비용	997	1,006
당기순이익	4,241	2,861
당기총포괄이익	4,202	2,815

라. 운용자산규모

(2022.11.1 현재/단위: 억 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특별자산및	혼합자산및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부동산파생	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파생		
수탁고	8,241	1,052	2,076	0	4,704	3,450	0	133	9,380	1,003	0	30,040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신탁업자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개요

회 사 명	(주)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 2 가) ☎ 1588-1111 http://www.hanabank.com
회사연혁	1991.7. 설립 1999.1. 통합 '하나은행' 출범 (충청은행/보람은행 합병) 2000.2. Allianz AG 전략적 제휴 체결 2002.12. 서울은행과 합병. 통합 '하나은행' 출범 2015.09.01 (주)하나은행과 (주)한국외환은행 합병(KEB하나은행)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

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 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①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 22층 ☎ 02) 2168 - 0400 http://www.shinhanaitas.com
회사연혁	2000. 6 법인설립 2008. 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2) 주요 업무

①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 곡로 88(운니동 98-5) T.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여의 도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여의도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T.02-721-5300 T.02-721-

		T.02-398-3900	T.02-3215-1400	5300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구성과 권한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ㄱ)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

상의 수로 결의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하며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증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써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시행일 2015.1.1])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의 (3) 내지 (4)의 사유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이내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

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
- 투자신탁의 명칭
-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취득한도 초과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이는 방법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도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투자중개업자 선정 시 각 자산에 대한 평가항목은 조사분석서비스와 매매체결서비스로 분류하며, 운용담당부서에서 항목별 배점기준을 두어 평가한다.		
	구 분	조사분석서비스	매매체결서비스
	배점기준	70%	30%
평가방법	<p>① 당사의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한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선정한다. 이 경우 각 운용담당부서에서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해당 임직원 중에서 평가위원을 정한다.</p> <p>②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의 평가·선정은 분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평가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p> <p>③ 당사는 거래 투자중개업자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p>		

주1) 2014.1.2에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펀드용어정리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배당소득	펀드운용시 증권(주식·채권 등)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의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이득	펀드운용시 증권(주식·채권 등)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